

# 人格權 保護의 法理에 관한 研究\*

최 낙 균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 목 차 >

- I. 인격권의 개념
- II. 인격권의 주체
- III. 인격권의 법적 성질
- IV. 인격권의 한계
- V. 결론

## I. 인격권의 개념

### 1. 서설

인격권의 개념은 한마디로 다의적이다. 역사적으로는 자연권으로서 자연법학 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권리 즉 모든 권리가 파생되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은 오히려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승인하기 어렵다는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다.<sup>1)</sup> 그러나 인격권의 정의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인격에 존속하는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sup>2)</sup>로 인간의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보호되지 않

\* 투고일 : 2011.11.23 심사완료일 : 2011.12.16 게재확정일 : 2011.12.19

1) 이재석, 인격권의 현대적 전개와 보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9면.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424면.

으면 안 되는 제 이익 또는 건강과 생명을 보유, 보존할 권리 혹은 권리주체이다. 즉 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sup>3)</sup>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권은 그 성질상 권리자 자신과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법익이라 할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인격권은 재산권과 가족권과도 구별되는 인간의 본원적인 권리로서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격권보호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설에서는 우리 민법 제751조의 신체, 자유, 명예 규정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외에 정조, 성명, 초상 등의 침해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sup>5)</sup>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동조할 수는 없다. 인격권에는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개별적 인격권이란 일반적 인격권을 분리해서 구체적인 인격권 예컨대 생명권, 신체권, 명예권, 초상권 등의 각각의 인격권을 말하고, 일반적 인격권이란 개별적 인격권의 총체이며 또 한정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지만 역시 보호되어야 할 인격적 이익을 총칭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개념임과 동시에 이들 개별적 인격권의 모권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 규정만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에 대하여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예가 우리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각 국에서도 인격권의 내용을 초상, 성명, 프라이버시 등 더 나아가 생활이익에까지 그 침해 범위를 확산시키고 있어 일반법에 기존 법규정과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독립 법을 따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여건이 진전되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인격적 가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격권이 다른 권리들과 구별하는 것이 모호하거나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무제약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최소한 일정한 한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천부적 권리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인격권은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보호의 수단으로 재산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3) 김상용, 지적소유권법(제5전정판), 육법사, 1998, 70면.

4) 이재석, 앞의 논문, 10면.

5) 박윤지, 신정판 채권각론, 박영사, 1996, 711면.

## 2. 각국의 태도

개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을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대륙법계의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개별적 인격권으로서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동일성은 인격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국가들이 인격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의 동일성이 인격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일본<sup>6)</sup> 등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독일

독일은 조형예술 및 사진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초상권<sup>7)</sup>을, 민법 제12조에서 성명권<sup>8)</sup>을 각각 규정하여 개별적 인격권으로서 초상권과 성명

- 6) 일본의 경우에는 Publicity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륙법계로 분류하였다.
- 7) KUG 제22조 : 초상은 그려진 사람의 승락이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전시될 수 있다. 그려진 사람은 자신이 그려지게 되는 점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다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의 승락을 한 것으로 한다. 그려진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려진 사람의 친족의 승락을 필요로 한다. 본 법상의 친족이란 그려진 사람의 잔존 배우자 및 자식이며 배우자 및 자식이 모두 없다면 그려진 자의 양친이다. 초상권과 관련된 판례 다음과 같다. BGHZ, 1968, 2 20. VI ZR 200/66 :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축구선수의 초상을 쇼핑백에 인쇄하여 판매한 사건에서 축구선수의 초상권을 침해 인정하였다. ; BGHZ 1979. 6. 26. 49. 288 : 축구선수 뒷모습 광고에 이용한 사건에서 축구선수의 초상권 침해임을 인정하였다. ; BGHZ 1960. 11. 7. 87/59 : 단순한 개인으로서 적시된 것이 아니고 본배우가 관계된 묘사가 그의 출연한 영화의 배역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KUG 제22조의 제한은 고려 되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언론판례총람, 한국언론연구원, 1997, 517-555면).
- 8) 독일 민법 제12조(성명권) : 어떤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하여 타인이 권리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루거나 또는 타인이 권한없이 동일한 성명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권리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속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부작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명권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1959년 가수의 성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카타리나 바렌티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인정(한위수, 퍼브리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 10-11호, p. 32에서 재인용) ; BGHZ 81.75 : "허락 없이 원고의 성명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독일 제국재판소 1938. 9. 29

권을 보호하고 그 외 목소리<sup>9)</sup>와 같은 동일성은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보호하며 지적, 경제적 자기결정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0)</sup> 또한 개별적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은 처음에는 개인의 개별적인 인격적 이익보호 관점에서 파악되었지만, 1956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sup>11)</sup>에서 초상권은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예외<sup>12)</sup>는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1986년 Nena사건<sup>13)</sup>에서 유명한 가수가 자신의 유사성을 관리단체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면, 관리단체는 제3자가 허락 없이 가수의 유사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비록 네나는 성명권의 비양도성 때문에 사용권자에게 자신의 성명권 침해금지 청구권을 양도할 수는 없지만, 사용권자는 네나의 유사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판결하여 초상권의 재산적 권리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어떻

---

판결 :소설과 실제간에는 총지배인이라는 호칭, 재력가, 기업활동영역, 출신지 등이 공통됨을 이유로 원고의 성명권침해를 인정하였다( Ibid, pp. 517-555).

9) OLG Hamburg, 1989. 5. 8, 3 W 45/89 ; GRUR 1989, 666 : 라디오 광고를 목적으로 목소리가 유사한 사람에 의해서 Heinz Erhardt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 침해임을 인정하였다.

10) BGHZ 1981. 6. 26. IZR 73/79 ; 독일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1954년 독자편지판결을 통하여 처음 인정되었다.

11) Ibid

제23조 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없이도 배포 혹은 공개·전시 될 수 있다.

1. 시사분야에서의 초상
2. 사람이 어떤 경지 혹은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나는 모습
3. 표현되는 사람이 참가했던 집회,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모습
4. 배포 및 전시가 예술상 고도의 이익에 공해지는 한도에서 주문 제작되지 아니한 초상

13) Ibid. 1986. 10 14 VI ZR 10/86 ; JZ 1987, 158 : Hubmann교수는 이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위 판결에 따르면 초상권이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이다"라고 하고 있다. Schricke교수도 이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위 판결에서 네나가 저작권에서와 같은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위 판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초상권은 아직은 비양도성이나 지적재산권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독일에 있어서 초상권을 아직은 인격권의 일부로 파악되고 있는 듯 하나 위 판례에서 보듯이 점차로 저작권의 형태 즉 권리의 양도는 불가능하나 재산적 권리성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14)</sup>

## 2) 미국

미국에도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격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유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대륙법과는 달리 불법행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법은 대륙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게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불법행위법도 일반적인 구성요건주의를 취하지 않고 개별적인 구성요건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의 유형마다 독립한 구성요건을 취하며 판례에 의해 형성 발전되어 왔다. 특히 미국은 프라이버시권이 고도로 발전하여 왔는데 이 권리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이 19세기말에 이르러서였다. 19세기말은 황색저널리즘의 발흥기로 기업화한 신문들이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책임한 선정적인 보도로 경쟁하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Warren과 Brandeis가 공동으로 작성한 프라이버시권이 발표되어 이 건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sup>15)</sup> Warren과 Brandeis는 황색저널리즘시대에 프라이버시권이 라는 논문에서 신문 잡지는 모든 방면에서 신중함과 분별의 한계를 넘고 있고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 고독이나 프라이버시가 개인에게는 불가결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각종 발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사람들을 정신적 고통이나 비탄에 빠지게 하였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sup>16)</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 후에 명예훼손 재산권의 침해 묵시적 계약의 위반 신뢰 내지 신탁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구제가 인정된 전통적인 보통법의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들 판례들이 실제로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sup>17)</sup> 그리

14)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하나로 파악하는 일원론을 취고 있다.

15) S.D.Warren/L. D.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193(1890) ; 안상훈 언론보도와 인격권보호에 관한 연구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6) S.D Warren/L.D Brandeis, Ibid., p. 196.

17) S.D Warren/L.D Brandeis, Ibid., p.192-214.

고 개인적인 서면 기타의 지성 감정의 산물, 개인의 용태, 언어, 행위 및 개인적인 교제관계도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ren과 Brandeis의 논문 프라이버시권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뉴욕주 최고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고 순수한 정신적인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도 곤란하여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법적 범위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여 만약 소의 남발로 인한 혼란 재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그러나 그러한 판결은 입법에 의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로 자극 받은 뉴욕주 의회는 1903년 뉴욕 시민 권리법을 제정하여 광고 영업 목적으로 생존자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경범죄가 된다는 것과 자기의 성명, 초상을 이용당하는 자는 정지명령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조지아주 최고 법원은 은 개인은 타인의 권리나 공적인 법 및 공공정책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질과 성격에 비추어 가장 안락하고 즐거운 방법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건 불문하고 그의 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연권에서 유래한다고 하여 Warren과 Brandeis의 프라이버시권을 전권일치 찬성으로 인정하였고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도 Melvin사<sup>19)</sup>에서 주법원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원칙으로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0)</sup> 즉 첫째 프라이버시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 수반되는 권리로서 그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둘째 프라이버시권은 인적 소송으로서 생존하는 동안에만 인정되고 이미 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이에 동의한 때에는 프라이버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공적 인물 이른바 유명인 되어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경우에는 역시 존재할 수 없다. 넷째 프라이버시는 뉴스 앞에서는 양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과 공공의 권리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프라이버시는 구두에 의해서는 침해받지 아니하며 소송은 그 공표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등인데 인격권의 일종인 프라이버시법을 1974년에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다.

18)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171 N.Y.538.

19) Melvin v. Reid, 112 Cal. App. 286, 297.

20) 변재욱 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언론중재, 1985, 여름호, 19면 ; 윤명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역사적 고찰-미국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20권 제1호, 1985, 112면.

### 3) 영국

영국의 Common Law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불법침해이론 재산권의 확대 해석 등을 통하여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처음에 보통법은 재산권의 침해를 구제함을 주로 하는 권리였으나 차츰 신체의 침해도 불법침해의 일부로 인정 육체적 이익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나아가 폭행미수도 불법행위를 성립 시켰는데 정신적 불안 공황을 구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격적 요소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불법행위의 일종인 Nuisance이론은 음향, 취기 등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함을 구제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동시에 부수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신적 안전도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 재산권의 확대 해석으로 인하여 유휴 재산권권 뿐만 아니라 무휴재산권도 보호하게 되어 인간의 정신생활 인격의 표현도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이상의 3이론은 직접적으로 프라이버시의 독자적 권리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려는 것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의 권리성 인정에 크게 기여 하였다.<sup>21)</sup>

### 4) 프랑스

인격권을 일반적 권리로서 그 보장을 선언한 것은 1789년의 인권선언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현행 프랑스 헌법 전문에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1946년 헌법 전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완성된 인간의 권리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집약된 관심을 엄숙히 선언한다. 고 명시됨으로써 승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민법에서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법행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1382조와 제1383조에 의해 인격권을 보호하여 왔다. 판례는 다양한 인격권의 보호를 위해 19세기 이래 저작권, 편지의 비밀에 대한 권리 성명권, 초상권 신체에 관 권리 등의 제 권리를 소유권에 동일 시 하는 것에 의하여 혹은 이들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과실로 구성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왔

21) 김용규·권오규, 프라이버시권리보호-사생활의 민법적 보호, 경북대학교 논문집, 1968, 330면.



다.<sup>22)</sup> 또한 1970년대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제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었고 제2항에서 ‘법관은 손해배상 외에 임치 압류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증지시키기에 적당한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들은 급속 심리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충분한 권리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 제164조에 인격권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격권행사의 의사에 의한 제한은 그것이 공공의 질서에 반한 때에는 무효이다. 와 제165조에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것이 종료해야 한다는 것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인격권 침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규정의 등장으로 프랑스에서 인격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먼저 인간의 육체적인 면에 대한 보호이다. 예컨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보호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1382조가 해석의 중심이 된다. 다음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면에 대한 보호이다. 여기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인격의 보호와 사적인 인격의 보호 도덕적인 인격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지적능력의 보호 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프랑스 민법 제9조이고 보충적으로 제1382조가 적용된다.

##### 5) 스위스

20세기 초기에 제정된 스위스 민법과 채무법은 인격권의 인정과 보호에 있어서 선구적이었다. 스위스 민법전 제28조는 ‘인격적 관계를 근거 없이 침해당하는 자는 그 방해의 제거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 또는 만족조치로서 금전급부를 구하는 소로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법 제49조에서는 인격관계를 침해받은 자는 그 귀책사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특히 침해 및 귀책사유가 무거운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만족조치로서 금전급부청구권을 갖는다. 법관은 전항의 급부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다른 종류의 만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적인 인격권 외에 포괄적 일반적인 인격권을 넓게 승인한 것

22) Constantinesco, Die Persönlichkeitsrecht und ihr Schutz im franzÖnischödu Recht, Acp 159(1960), S, 320ff.



으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고 그 후 세계 각국의 인격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23)</sup> 그러나 이 민법은 1983. 12. 16일에 개정되었는데 즉 제28조 제1항에 '인격을 위법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관련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선적인 구제 수단으로 제28조의a조 제1항 제1호가 침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제28조의c조에 인격이 위법하게 침해 되었다든가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및 침해에 의하여 용이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을 소명한 자는 가처분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한 침해로 임시의 금지 또는 배제도 인정하였다.<sup>24)</sup>

#### 6) 일본

일본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판례로 인정<sup>25)</sup>되어 왔다. 일본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인정한 사건은 Mark Lester사건<sup>26)</sup>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주연한 영화 작은 목격자 중 원고의 상반신이 화면 가득히 클로즈 업 된 장면을 초코렛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배우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감축되는 반면 일반시민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에 관해 통상 가지고 있지 않은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배우는 그의 성명이나 초상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영광의 르망에 자동차 경주선수로 등장한 Steve McQueen을 자사제품선전에 사용한 사건<sup>27)</sup>에서는 법원이 광고에 Steve McQueen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일반 공중의 주의를 끌기 위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영화장면과 상품선전부분은 대등한 형태로 병존하는 광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기도 하였

2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총, 10집 제12호, 법원행정처, 1979, 213면.

24) Bucher. Natürliche Personen und Persönlichkeitschutz, 1986. S. 159-160 ff.

25) 最高裁 昭和44(1969). 12. 24 판결(초상권); 最高裁 昭和63(1988). 2. 16 판결(성명권) 참조.

26) 東京地裁 昭和51(1976). 6. 29. 판결.

27) 東京地裁 昭和55(1980) 11. 10. 판결.

다. 이후 일본 법원은 유명야구선수인 왕정치의 허락 없이 왕정치의 사진과 이름이 표시된 메달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건<sup>28)</sup>인 인기그룹 오난코 그룹의 성명, 초상을 무단으로 전화카드, 지갑, 카렌다 등에 사용한 사건<sup>29)</sup>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현재 일본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서 성명, 초상권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재산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있는 듯 하다.

## II. 인격권의 주체

### 1. 자연인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가치를 보호한다는 성격상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현행 민법상 자연인이 일반적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인 인격권의 주체는 당연히 인간 즉 자연인이 되며, 그는 원칙적으로 출생 때부터 인격가치를 가지고, 일반적 인격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이 인격가치를 가지고, 그 인격가치가 일반적 인격권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 승인될 수 있다면 자연인을 자연인이라는 사실로써 일반적 인격권의 주체로 생각하는 데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sup>30)</sup> 우리 민법에서도 태아의 보호에 있어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정적으로 권리능력을 향유한다는 뜻이다. 즉 태아에게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sup>31)</sup>, 재산상속권<sup>32)</sup>, 재산의 대습상속권<sup>33)</sup>, 증여<sup>34)</sup>와 유류분권<sup>35)</sup>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sup>36)</sup>하고 있

28) 東京地裁 昭和53(1978). 10. 2. 판결(판례 타임지 372호. 97면).

29) 東京高裁 平成2(1990) 12. 21. 판결(判例時報 1400호 10면).

30) 김오중, 앞의 논문, 21면.

31) 민법 제762조.

32) 민법 제1000조 3항.

33) 민법 제1001조.

34) 민법 제1064조.

35) 민법 제1112조.

36) 박윤직, 신정판 민법총칙, 박영사, 1994., 139면.

다. 물론 태아가 일반적 인격권을 향유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태아의 일반적 인격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태아가 이미 출생한자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일반적 인격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이 문제될 뿐이다.<sup>37)</sup>

## 2. 사자(死者)

사람은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인격권도 그 사람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는가? 아니면 인격권은 그 사람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상 주체의 상실에 의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고인의 저작이나 성격상, 생활상 등이 왜곡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사자 그 자체의 인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일본에서는 사자의 경우 사자 자신의 인격권이 사후에도 남아있느냐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은 인간이 적어도 사후의 중대한 명예훼손적 왜곡에 대한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이 기대 하에 생활할 때 비로소 충분히 보호되므로 사자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생존자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의의를 가지므로 사자의 명예훼손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해석론 상으로도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설(직접보호설)<sup>38)</sup>과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상실하고 그 승계를 위한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는 것이 민사상의 대원칙이므로 사람의 일신에 전속하는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포함하는 인격권은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며 또 특별한 규정도 없는 불법행위법의 영역에 위 원칙에 위배되는 사자의 인격권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자 자신에 대한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자의 명예훼손을 매개로 해서 유족의 명예훼손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사자에 대한 유족의 추모의 정 등 유족 고유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부정설(간접보호설)<sup>39)</sup>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37) 이재석, 앞의 논문, 84면.

38) 五十鬘清, 인격권론, 一粒社, 1989, 167-169면.

39) 東京地判 1977. 7. 19 선고;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허망하게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사자의 친족 또는 그 자손의 사자에 대한 敬受追慕의 情등 인격적 법익을 사회적으로 타당한 수인한도를 넘어서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東京高判 1979. 3. 14; 大阪地判 1989.12.27., 判例時報 제 1341호 p. 53; 장재욱, “사자의 인격

독일에 있어서는 사자의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다.<sup>40)</sup> 즉 사자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가치와 작품이 존속하는 한 이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은 존속될 수 있으며 사자 자신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것은 유족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이와 같은 사자의 이익은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 자신의 이익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의 인격권과 유족의 인격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GH도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일련의 법 창조의 초기단계에서 이미 인격가치가 사후에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도 하였다. 독일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사자에게까지 확대시킨 대표적인 판례는 Mephisto판결이다.<sup>41)</sup> BGH는 이 사건은 기각하였지만 기본법 제1조, 제2조의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여 인간은 최소한 사후의 중대한 명예훼손적 왜곡에 대하여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생전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발전은 기본법의 의미에서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여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였다.<sup>42)</sup> 또한, 사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상이나 세인이 그에 대해 가진 추억, 이미지 등을 법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자의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주체는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감정의 침해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자의 인격권의 내용은 생전의 그것에 비해 많은 제약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인격권보호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한 결과일 뿐이지 사자의 인격가치를 생전의 경우만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 누가 법적인 구제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사자의 근친자, 사자가 지정한 자, 사자가 묵시적으로 수권했다고 생각되는 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자의 인격가

---

보호.” 1995, 민사법학회 발표논문에서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유족 고유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하여 간접보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40) 말과 목소리 등 언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연극인의 인격권은 그의 사망 후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인격권은 그 외 예술적인 특성을 유성모사기의 도움을 받아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도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Hambrug 高等法院 1989. 5. 8. 선고-3W 45/89 판결).

41) BGHZ 50. 133 (1968. 3. 30.) ; 이 판례에 관하여는 “메피스토-클라우스만 결정 (Mephisto- Klaus Mann), 판례연구제2집. 고려대학교연구소. 1983.

42) 이재석, 앞의 논문, 85면

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줄어들며, 그에 대한 인격적 이익은 시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자의 인격권의 보호시점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sup>43)</sup> 이와는 달리 영미법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문제된 명예훼손적 표현이 개별적으로 유족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한 유족은 사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sup>44)</sup> 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와는 달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sup>45)</sup> 우리나라도 사자에 대한 인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고.<sup>46)</sup> 판례에서도 사자에 대한 인격권을 일부 인정을 하기도 한다.<sup>47)</sup>

### 3. 단체

단체<sup>48)</sup>는 자연인과 같이 인격적 가치가 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체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독자적으로 사회적 적용을 하면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지는 실체로서 존재 하는 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체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포괄적인 인격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단체에는 민법이나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단체의 인격권은 보호되는 권리의 내용 및 한계와 단체의 구성목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유형의 인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에게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자유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권리는 성질상 인정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성명권, 명예, 신용권 등의 권리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 할 수가 있다. 사생활은 단체의 목적 활동에 따라 보호가 구하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비밀영역

43) 김오중, 앞의 논문, 10면.

44) *Procurier v Martinez* 416 U. S. 396, 427., 1974.

45) 김오중, 앞의 논문, 24면.

46)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조 참조.

47) 서울지방법원, 1995. 6.3. 선고 94카합9230 판결.

48) 법인, 비법인 포함.

이나 기업정보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격영역의 문제가 되면 단체에 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등의 단체가 초상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생활상이나 성격상에 대한 권리는 그 의의가 자연인 정도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단체에 귀속할 수 있을 것이다.<sup>49)</sup> 단체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 원상회복 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신적 고통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인도 활동하는 거래분야에서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의 성실성, 신용, 능력, 기타 기업적 성격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즉 법인<sup>50)</sup>도 인격가치를 가지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sup>51)</sup> 우리 판례도 일부 이를 승인하고 있기도 하다.<sup>52)</sup>

### III. 인격권의 법적 성질

#### 1. 서설

일반적 인격권은 근원적 권리로서 모든 개별적 인격권의 모권이며 여기서 개별적 인격권이 파생하며 이미 구체화된 개별적 인격권에 불비가 있어 새로운 개별적 인격권의 전개를 위하여 항상 거기에 환원될 수 있는 등 타 권리에 대하여 주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적 인격권인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신용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권리 외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개별적 인격권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주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sup>53)</sup> 인격권을 인정하게 된 초기에는 종종 인격권을 공법상의 권리와 혼동하였다. 이것은 독일 기본법 제1조, 제2조가 일반적 인격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승인하면서 생기게 된 혼란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반적 인격권을

49) 이재석, 앞의 논문, 89면.

50)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도 포함.

51) 乳加工業體가 신문광고를 통해 상대기업을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은 위법한 것으로 虛偽誹謗廣告行爲禁止假處分決定은 정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9. 90 선고, 1992카116924 판결.

52)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53) 김오중, 앞의 논문, 1997, 12 19면.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공권으로 본 학자도 있었다. Nipperdey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법질서에 의해 공권 및 사권으로서의 보장이 되며 그것은 헌법상의 의미에서 기본권이므로 독일민법 제823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권리라고 하여 공권성과 사권성의 양 의미에서 인정한다. 이것은 인격권을 최초로 승인한 판례<sup>54)</sup>의 표현에도 보인다. 즉 연방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음 단계에서는 일반적 인격권과 기본권이 혼동되어졌다. 그러나 인격권은 인권개념과 구별되어야 하고 결국은 인격권은 사법상의 권리로 정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인격권 개념을 사법상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의 내포와 외연을 여러 각도에서 확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인격권의 법적보호에 중요한 요소이다.<sup>55)</sup> 인격권은 물권과 같은 절대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예방 또는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의 인격권 침해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서처럼 그 절대권의 성질에서 인격권 내용의 실현이 침해자에 의하여 그 실현이 방해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sup>56)</sup>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 절대성을 인정해도 그리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가치로 발생하는 인격권과 순수한 재산적 가치로 발생하는 물권은 구별할 필요는 있다.

## 2. 권리성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면 정보 자체가 다른 재화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 발전되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정보가 제3의 자원이 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당연히 수집, 정리,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의 정보도 부득이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수집 관리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

54) BGHZ 133,334(338).

55) 이재석, 앞의 논문, 11면.

56) 김오중, 앞의 논문, 20면.



활은 공간적으로도 또는 내용면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다수국가들이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헌법, 법률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sup>57)</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신체, 건강,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생활영역이란 일반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생활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주거라는 보호범위가 이웃의 호기심이나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사생활영역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였고,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19세기까지는 주거의 자유가 사생활보호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판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통신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사생활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양과 질에서 증가함으로써 사생활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전화, 마이크를 이용한 도청가능성, 녹음기, 사진기 등의 출현은, 모든 장소에서 사적인 대화를 도청할 수 있고 또는 인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동의 없이 유포할 수 있는 등, 종래에 알지 못하였던 완전히 새로운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미 이러한 형태의 침해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대한 침해라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 파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사생활의 공간적인 보호로서 주거의 보호가 불필요 해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호는 예나 지금이나 불가결하고 중대하지만,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오늘날의 변화한 현실에 비추어 사생활의 단지 부분적인 측면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국가의 생존적 배려의 의무, 일반 국민의 알리고 하는 욕구의 증대, 정보가 다른 재화나 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재원으로 간주되는 정보기능의 변화,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현대 산업사회는 국가의 생존적 배려, 국가에 의한 계획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의 의무가 있는 국가는 미래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행위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질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한 안, 즉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

57)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사생활이란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자아의 외부로부터의 불가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영역이다.(판례)

연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영역과 관계되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sup>58)</sup> 통계조사, 호구조사, 국세조사 등은 국가행위의 바탕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특히 사회급부의 영역,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및 하수처리, 병원, 학교 등과 같은 국민보건시설 및 교육시설의 설치 등은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야 하고, 계획은 개인생활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생존을 성공적으로 확보할수록, 개인의 사생활영역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존적 배려의 과제는 점점 더 행정의 현대화·기술화, 특히 자료처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이행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기술의 발전은 복지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국가가 생존배려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전산화된 자료처리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점점 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깊숙이 파고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sup>59)</sup> 이에 따라 사생활영역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이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헌법은 사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Commn Law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헌법상 권리로 논의하기보다는 명예훼손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이론에 의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1890년 S.D. Warren-L.D. Brandeis의 논문에서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로써 정의한 후 프라이버시권은 독립된 헌법상 권리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기혼자의 피임기구 사용을 금지한 Connecticut 주법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판례상의 권리며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도 일반적 인격권 보장에 대해서 학설로 널리 인정되어 오다가 마침내 정보보호법에 의해 명시 규정으로 보호되고 있다.

### 3. 일신전속성

58) Vgl. Benda, Menschenwürde und Persönlichkeitsrecht, in: Benda/Maihofer/Vogel, HdbVerfR(1), 1995, §6, Rn.27.

59) Vgl. 국가의 생존배려 의무와 사생활과의 관계에 관하여 Benda, Menschenwürde und Persönlichkeitsrecht, in: Benda/Maihofer/Vogel, HdbVerfR, 1995, §6 Rn.17, 24, 27, 44 f.

인격권은 사람의 인격 그 자체에 전속하는 고유한 권리이다. 따라서 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 다만 인격권의 침해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체화 된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가 가능하다. 인격권은 그 자체로 상속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의 대상이라도 이미 생전에 구체화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으로 된다. 현재의 판례<sup>60)</sup>도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어도 상속의 대상으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의 요지는 상속의 대상을 인격권 중에 생명, 신체침해의 경우에 적용이 한정하였고, 명예, 프라이버시권 해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1)</sup> 인격권을 권리를 작용에 따라 분류한다면 지배권에 속한다. 즉 인격권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제1차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직접적 지배를 지배권의 제1차적 효력이라 하는데 대하여, 배제청구를 제2차적 효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의 개입이 없이 자신을 객체로 한 비재산적인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주로 신체 건강, 자유, 명예 등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익을 제 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인격권은 금세기 후반에 와서야 법적인 의의가 강조되어 법익성이 인정된 것으로 인간존중 사상의 대두와 문명발달에 힘입어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유형의 이익인 재산권에 대비하여 무형의 이익인 인격권의 중대한 법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오염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재산적인 보호만으로는 그 구제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 인식하게 되어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의 광범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인격권도 재산권과 견줄 수 있는 권리로 군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실정법에 명시하거나, 학설 판례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격권의 권리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sup>62)</sup> 이유로는 신체의 안전 및 정신적 평온과 같은 서로 다른 인격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이지 못하고 우리 민법에 규정

60)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 대법원 1969, 4, 15. 69다268 판결.

61) 이재석, 앞의 논문, 12면.

6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973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으로는 기능적인 것을 꼭 개별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기능적일 반면에 사인은 침해에 보다 더 취약하고, 반박할 효과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사인은 침해에 보다 더 취약하고, 반박할 효과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민법상의 규정 역시도 명문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의 근거로 될 수가 없다.

#### 4. 소결

우리나라에서도 인격권이란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는 근거로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개별적인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법인 민법에서도 직접적이고 완전한 규정은 아니지만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유추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관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그 보호의 기준이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sup>63)</sup>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sup>64)</sup> 인격권인 명예훼손의 침해가 된다고 본다.

### IV. 인격권의 한계

6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 1999. 2. 선고 98다31356 판결.

6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불법행위이론의 발전에 따라서 피침해 이익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정조 이외에 초상, 성명 등이 인격권의 범주에 든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외에도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다양한 이익들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이익들을 인격권에 포함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권은 학설<sup>65)</sup>에서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다가 후에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sup>66)</sup> 다른 한편 인격권은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소멸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인격권도 그 성질상 주체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인격권의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자의 인격권도 승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sup>67)</sup> 판례도 일반적 인격권을 사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sup>68)</sup> 단체도 인격가치를 가지며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실제 보호가 문제될 때에는 개별적 인격권을 통해 보호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 하지만 법인 등의 단체가 일반적 인격권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 승인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단체의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려는 입장이 증가되어 왔으며 BGH도 최근에 *Der Geist von Oberzell*,<sup>69)</sup> *BMW*<sup>70)</sup>판결 등에서 계속하여 단체의 일반적 인격권을 승인하고 있고 그 인정 범위도 일정한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새로운 인격권의 보호 법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조의 차단, 소음, 배기, 악취 등에 의한 생활이익의 침해까지 재산권으로 변형되는 것이 많은데, 위의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이익자체가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로 인격권적 이익에 있으므로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 구제를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판례에서도 금융업자가 새벽에 걸쳐 대금변제의 최고를 위해 전보를 배달시킨 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생활의 평온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sup>71)</sup> 가라오케의 소음으로 인해 안면방해를 받은 경우에 인격권에 근거하여 가라오케장치의 사용

65) Warren & L. D. Brandeis. Right to Privacy. Harvard L. Rev. vol. 4. 1890. p 196.

66) *Pavesich v New England Mutual Life Insurance Co.*, 122 Ga. 190. 50S. E. 68(1905)

6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2.

68) BGHZ 1968. 3. 30. 50. 133 : 이 판결이 인격권의 발달에 획을 그은 이른바 *Mephisto* 판결로서 사자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였다.

69) BGH 1975, 6, 3. NJW 1975. 1882.

70) OLG Frankfurt 1985, 2, 28 NJW 1985. 1649.

71) 東京地判 1980, 4, 1 判例時報 966호, 65면.

정지를 요구한 사안에 관해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육체적, 정신적 자유의 침해이므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고 수인의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한 침해로써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sup>72)</sup>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환경피해도 인격권에 포괄하여 인격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sup>73)</sup>

## V. 결론

인격권에 대한 보호는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기존 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나 판례로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현재는 별도 독립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으로 독립법을 제정하여 이의 권리를 보호 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인정범위도 처음에도 경미하면서도 극히 부분적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점차 그 범위가 상당히 세밀하면서도 광범위<sup>74)</sup>하게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 동안 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늦게 이를 인정하는 태도로 변화하였지만 그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속히 빠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록 늦게 인정하긴 하였지만 국민정부나 참여정부나 하면서 야권에서 집권하면서 이행 정책 중 장 먼저 행한 것이 언론의 실질적인 보장인데 이의 보장도 비록 늦게 출발한 것에 비해 오히려 선진국 보다 더 넓고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았다. 이런 와중에 언론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격 역시 그 보호의 범위가 넓혀지면서 실질화가 됨에 따라 피해구제를 제기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인격권 보호의 명문규정의 불비로 법원에 따라 같은 사안임에도 인격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판결로 나타났고, 또 그 보호의 범위도 극히 좁았다가 넓혔다가 하다가 2005년에 인격권 보호의 범위를 대폭 확장한 법인 언론중재및피해

72) 大阪地判 1989. 8, 7 判例時報 1326호, 16면 (지하철공사 소음피해).

73) 環境汚染을 인간생활 자체에 대한 침해, 즉 인격권의 침해라고 파악하여 이에 대해 정지청구의 법적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권룡우, “공해의 예방 및 배제청구”, 법과 공해, 한국법학교수회편, 1974, 165-166면.

74)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밖의 인격적 가치까지.

구제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 제정되어 인격권에 대한 보호의 길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하기에 이르렀다.<sup>75)</sup> 동법 제5조에서 인격권에 대한 명문 표현과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인격권 보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적인 인격권보호 규정인 민법에서의 규정 불비로 인한 완전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격권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 개별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법률 외 저작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민법 제764조와 동법 제750조, 동법 제751조, 동법 제752조에서 보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모두 개별적인 인격권 보호 규정으로 이의 규정으로서는 새롭게 등장 할 또 다른 예측 불허의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격권의 내용은 학자의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사회와 문화발전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관해서만 인정되다가 점차 명예, 자유, 및 초상권 그리고 성명권 등에까지 확대되고, 이제는 생활이익, 프라이버시까지 인격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생명, 신체, 건강은 대기나 하천의 오염 등에 따른 일련의 생활방해나 일조권의 침해 등 현대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보호필요성이 증대된다. 자유권은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포함한다. 체포, 감금, 폭행, 도로의 행방해 등으로 신체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공동 절도나 사기, 강박으로 정신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의 성명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이익인 성명권도 인격권으로서 보호된다. 인격권침해에 대한 현행법제상의 보호로는 민법에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명예훼손적

75) 동법 제 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 다. ③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격권 이외의 다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法源)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 문제가 많다. 이유는 우선 이 규정들은 당초 제정 당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직접규정이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우선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를 적용 정신적 침해에 대한 위자료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절차에 대해 인격권침해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이 드물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다고 이의 보호를 위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격권침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의 청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격권 보호 전부를 보장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물권의 보호를 위해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역시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격권<sup>76)</sup>에 관해서는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으로 판례상으로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개념으로 금전배상과 명예회복처분으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인격권의 침해형태도 점차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인격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반 조항적 성격을 가지는 인격권보호규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무과실 책임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 위법성만으로도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행법상의 손해배상 근거 법원(法源)<sup>77)</sup>으로서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인격권 침해 보상에 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인격권 특유의 특성에 적용 할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격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도할 수도 포기 할 수도 없는 천부불가양의 권리인 반면 순수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현행법상의 일반적 손해배상 개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 배상을 제752

76) 인격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적 재산권.

77) 민법 제750, 동법 제751조, 동법 제752조, 등.

조는 위자료 책임을 가해자에게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는 강행 규정이 있음은 언론중재법 규정과 서로 모순 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주제어 : 인격권, 초상권, 명예권, 성명권, 신체권, 프라이버시권

## 참 고 문 헌

### 1. 單行本

- 강경근, 신정헌법, 법문사, (2004).
-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곽윤직, 민법강의(제12판), 박영사, (2012).
- 권영성, 헌법학원론(신정판), 법문사, (2009).
- 금동흠, 헌법요론, 광명, (2004) ; 헌법강의(전정5판), 법률출판사, (2009).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9).
- 김선택, 헌법사례, 법문사, (2000).
- 김상용, 지적소유권법(제5전정판), 육법사. (1998), 민사법연구5, 법원사, (2004).
- 김재형, 민법론1, 박영사. (2004).
- 김학성, 헌법(제4판), 박영사, (2010).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 이은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9).
- 전평국, 영상다큐멘타리론, 서울: 나남, (1994).
-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197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12판), 박영사, (2010).

### 2. 論文

-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2004).
-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서울대 법학, 39권, 제1호, (1998).
- 김영철, 프라이버시권의보호법익과 법적성격, 언론중재 여름호, (1999).
- 김오중,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1997).
- 김용규, 프라이버시권리보호-사생활의 민법적 보호, 경북대학교논문집, (1968).

-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서울대법학, 39권, 1호, (1998).
- 김창룡, 개인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 봄호, (2008).
- 김형일, 언론보도로 인한 루머의 확대 재생산과인격권, 언론중재 봄호, (2008).
- 변재옥, 독일에 있어서의 인격권 발전2, 영남대 학술논총, 10집, (1979)
- 박도희, 퍼블리시티권에 이전성에 관한 제고,신구대학교, 법과정책연구, 제5집, 제2호.
- 박남규, 언론자유와 개인법익간 충돌에 관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1998)
- 박대호,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2003).
- 성낙인,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 연구, 언론중재 여름호, (2002).
- 서종혁, Privacy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1995).
- 이재석, 인격권의 현대적 전개와 보호, 박사학위 논문 전남 대학교 대학원, (1995).
- 이정일, 우리나라 광고시장 개방에 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0).
- 이재진, 언론자유와 인격권갈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1)
- 정희섭, Publicity권의 이전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적 구제, 인권과 정의, (1996).
- 허희성, 사회의 공적인물에 대한 초상권 등의 침해요건, 저작권, (1995).

### 3. 외국문헌

- 丸山昌一, 違法性(1)-死者의 名譽毀損, 裁判實務大系 15, 青林書院, (1991).
- Campbell, C.(1997), International Media Liabi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rey, P.(1999), Media Law, London: Sweet & Maxwell.
- Carter, T. B., Franklin, M. A. & Wright, J. B. (1994),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New York : The Foundation Press, Inc.
- Crichton, John(1980), "Morals and Ethics in Advertising", in Lee Thayer(ed)., Ethics, Morality and The Media, New York: Hastings House,

Publishers, Inc., pp.105-115.

Crone, T.(1995), *Law and the Media*, London : Focal Press.

Dennis, E. E. & Noam E. M.(1989), *The Cost of Libel : Economics and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allant, S. & J. Epworth(2001), *Media Law*, London: Sweet & Maxwell.

Gerald, T. J., Gillmor, D. M., Barron, J. A., Simon, T. F. & Terry, H. A.(1998). *Mass Communication Law*,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Goodale(1985), *Communications Law 1985*, Practising Law Institute.

Holsinger, R.(1987), *Media Law*, New York: Random House.

Levitt, T.(1980), "The Morality of Advertising", in Lee Thayer(ed), *Ethics, Morality and The Media*, New York: Hastings HLevitt, T.(1980), "The Morality of Advertising", in Lee Thayer(ed), ouse, Publishers, Inc., pp.184-196.

Price, D.(2001), *Defamation: Law, Procedure and Practice*, London: Sweet & Maxwell.

Renas, A. M. et al.(198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hilling Effect*. in Dennis, E. E. & Noam E. M, *The Cost of Libel : Economics and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41-68.

[Abstract]

## A Study on Legal Principle of Personal Right

Choi, Nak-Kyoon

Ph.D., Dong-A University

Even though infringement in personal rights both in frequency and scope is evermore increasing nowadays, there are no solutions at the current time. Also, courts and judges differ in their rulings, since they judge the cases in their own standards, with no consistent and clear guidelines. Ther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people are exposed to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from unfair, commercial, yellow-journalistic reports and opinion editorials, the Korean government is neglecting its duty of strengthening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abuse of freedom of press. Accordingly, this thesis focuses on realizing realistic protection of basic and inherent personal rights.

Key words : personal rights, portrait rights, the right of name, benefits of daily lives, conflict of personal rights, privacy right